

1. 개정이유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택시운수종사자 및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법률 제20038호, 2024. 1. 16. 공포, 2025. 1. 17. 시행)됨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등이 받아야 하는 교육의 방법 및 내용,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의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택시운수종사자 및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의 방법, 내용 등 규정(안 제3조 및 제3조의2 개정)
- 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의 운전업무 자격요건 마련(안 제6조의2 신설)
- 다.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의 운전·범죄경력조회를 위한 서식 마련(별지 제3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관한”을 “관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교육은 1회로 하고,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

2.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나.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의 기술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교통약자서비스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교육은 연 1회로 하고, 교육시간은 2시간 이상으로 한다.

2.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나.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과 관련된 법과 제도

다.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요령 및 서비스

라.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③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 시간, 내용 등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를 말한다.

④ 제2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의 방법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1. 직원연수·조회·회의 등의 집합교육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3. 체험교육

⑥ 법 제13조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실시 관련 자료”란 교육일시·방법, 교육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교육내용을 포함한 교육 실시 자료를 말한다.

제3조의2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3조의2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실시 관련 자료”란 교육일시·방법, 교육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교육내용을 포함한 교육 실시 자료를 말한다.

④ 교통사업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제3항에 따른 교육내용이 포함된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 및 전년도 교육실적을 교통행정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특별교통수단 운전자의 자격요건) ①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용 자동차”는 “특별교통수단으로 활용되는 자동차”로 본다.

② 영 제14조의8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요청 및 회신 등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4조의8제2항 본문에 따른 운전·범죄경력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2. 영 제14조의8제2항제1호 및 제2호나목에 따른 운전·범죄경력조회 동의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3. 영 제14조의8제3항에 따른 운전·범죄경력조회 회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호서식 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운전·범죄경력조회 요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자	처리기간 14일
요청인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성명)		전화번호
조회 대상자	성명	한글	영문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연락처(휴대전화번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4제3항 및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8제2항에 따라 운전·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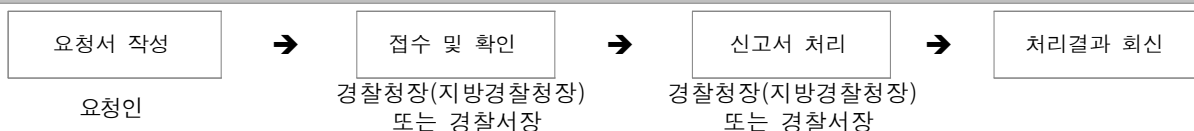
○○경찰청(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운전·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1. 성명의 영문란은 조회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여권에 표기된 영문 성명을 적습니다.
2. 조회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을 모두 적습니다. 다만,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에서 발행한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조회 대상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운전·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조회 대상자	성명	한글	영문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연락처(휴대전화번호 등)		

본인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4와 관련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려는 운전자로서, 같은 법 제16조의4제3항 및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8에 따른 운전·범죄경력조회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부동의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본인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4제3항 및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8에 따른 운전·범죄경력조회를 위한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부동의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청(경찰서)장 귀하

작성방법

- 성명의 영문란은 조회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여권에 표기된 영문 성명을 적습니다.
- 조회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을 모두 적습니다. 다만,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에서 발행한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운전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운전·범죄경력조회 회신서

조회 대상자	성명	한글	영문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주소	연락처(휴대전화번호 등)	

조회내용

운전경력	종별	범죄경력	[] 결격사유 있음
	발급일자(취소·정지)		[] 결격사유 없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8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경찰청(경찰서) 장 직인

작성방법

- 성명의 영문란은 조회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여권에 표기된 영문 성명을 적습니다.
- 조회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을 모두 적습니다. 다만,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에서 발행한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 조회 대상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1회로 하고,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

한 사항

② 법 제1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교통약자서비스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교육은 연 1회로 하고, 교육시간은 2시간 이상으로 한다.

2.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나.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과 관련된 법과 제도

다.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요령 및 서비스

라.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③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 시간, 내용 등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의 기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생략)

④ 제2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의 방법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1. 직원연수·조회·회의 등의 집합교육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3. 체험교육

<삭제>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13조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실시 관련 자료”란 교육일시·방법, 교육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교육내용을 포함한 교육 실시 자료를 말한다.

제3조의2(승무원 등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내용 등) ① (생략)

②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신 설>

<신 설>

<신 설>

제3조의2(승무원 등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내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삭 제>

③ 법 제13조의2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실시 관련 자료”란 교육일시·방법, 교육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교육내용을 포함한 교육 실시 자료를 말한다.

④ 교통사업자는 매년 1월 31일 까지 제3항에 따른 교육내용이 포함된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 및 전년도 교육실적을 교통행정 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2(특별교통수단 운전자의 자격요건) ①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

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용 자동차”는 “특별교통수단으로 활용되는 자동차”로 본다.

② 영 제14조의8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요청 및 회신 등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4조의8제2항 본문에 따른 운전·범죄경력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2. 영 제14조의8제2항제1호 및 제2호나목에 따른 운전·범죄경력조회 동의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3. 영 제14조의8제3항에 따른 운전·범죄경력조회 회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